



제422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조금에서 감사인 선임 비용 지출 근거 마련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3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보조금에서 감사인 선임 비용 지출(안 제18조의2 신설)	3
2. 회계 관리 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18조의3 신설)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2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5.
3. 회부연월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회계처리를 할 때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자체 수입·지출과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영세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충분한 회계 인력을 두기 어려워 회계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을 자체재원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저렴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노력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여지도 있어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외부감사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

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 지원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신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관련 조문 「지방보조금법」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

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함)는 감사인¹⁾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 비용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저렴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부실감사로 이어질 여지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충분한 감사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2023. 12. 21.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감사보고서의 작성 비용을 지방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²⁾, 해당 기준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2024. 1. 1. 시행)

제2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감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이 제정되어³⁾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원칙⁴⁾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서 감사보고서의 작성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하게 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교부받는 지방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지자체별로 보조사업의 규모나 재정여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가보조금과 관련하여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

3.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식사항

② 영 제11조제4항의 회계연도가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하여 작성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항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작성 비용을 지방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3)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위임법령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위임명령에 규정된 내용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법률 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권법률 조항 자체가 위임하는 사항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받은 내용과 범위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규정된 위임명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헌재 2010. 10. 28. 2008헌마408 참조).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바,⁵⁾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상기 개정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에 일률적으로 회계감사 비용 지출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경우 사업비 감소로 보조사업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법정 관리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2024. 12. 5. 의안번호 제2206236호, 기획재정위원회에 2024. 12. 6. 회부

2. 회계 관리 교육 의무화(안 제18조의3 신설)

개정안은 행정부 장관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 관련 조문 「지방보조금법」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회계 관리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24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이나 영세 지방보조사업자 등 충분한 회계인력을 두기 어려워 직접 회계처리를 하는 지방

6)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도 및 시·군·구의 비용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관리 지원을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지방보조사업의 회계 관리 지원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여지는 점을 참고하여 회계 관리 교육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관리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유형 등에 따라 회계 관리 교육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회계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는바,⁷⁾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상기 개정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2024. 12. 5. 의안번호 제2206236호, 2024. 12. 6.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의 규모와 성격 등 지자체별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률적·의무적으로 교육 실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337